

(불 입)

기준월: '22. 11.

직무교육센터 운영 문답집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산업안전보건교육원



목 차

제1편 직무교육 주요 Q&A

1. 직무교육 대상자	3
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	4
3.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	5
4. 신규/보수교육 주기	6
5. 신규교육을 혼합교육으로 이수 시 보수교육 일자는 온라인, 집체교육 중 어떤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?	”
6. 직무교육 면제조건	7
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/보수교육	8
8. 이직 시 직무교육 신규/보수교육 선택 기준	9
9. 직무교육 실시가능기관 및 기관별 직무교육 일정	10
10. 선임 대상자가 아니여도 직무교육 수료 가능한가요?	”
11.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정교육?	”
12. 간호사 보수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대체 가능?	”
13.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, 간호사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2에 따른 2시간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	”
14. 기술사 취득 시, 직무교육 보수교육 면제?	11
15.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 여부	”

제2편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안내 및 주요 Q&A

가. 홈페이지 안내	13
나. 주요 Q&A	14
1. 수료증 출력 방법?	”
2. 직무교육 인터넷과정 교육비 및 환불기준?	”
3. 동영상 재생 오류 시 조치 방법	15
4. 수강 취소 방법	16
5. 로그인 후 자동 로그아웃 안내	”
6. 환불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미입금 상태	”
7. 인터넷교육 계산서/전표출력 방법(산업안전보건교육원e 과정)	”
8. 학습기간 종료 시, 연장 및 재이수가 가능한가요?	17
9. 시험 평가가 있는 교육과정의 초기화 등 재응시는 불가한지?	”
10. 인터넷과정 참고자료 문의	”
11. 복습기간	”
12. 동영상을 다 봐도 이수완료가 안되는 현상	”
13. 모바일 교육 방법 문의	18
14. 대기신청 시 결제?	”
15. 개명 등으로 실명 변경이 된 경우	”
16. 참석 공문	”
17. 신규 사업장 등록 불가	”
18. 수료했는데 수강중으로 뜨는 현상	”
19. 가상계좌 입금증 출력은 어디서 가능한가요?	19
20. 크롬에서 카드결제 오류 시 조치방법은?	”
21. 본인명의의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이 없을 경우 본인인증 방법	20
22. 소속 사업장 또는 수료증 사업장 변경 방법?	”

1

직무교육 주요 Q&A

1. 직무교육 대상자?

○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법 제15조), 안전관리자(법 제17조), 보건관리자(법 제18조),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제19조),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(법 제21조),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(법 제74조), 안전검사기관 종사자(법 제96조, 제100조)입니다, 석면조사기관 종사자(법 제120조)입니다.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9조 참조

구분	항목	근거법	시행령	시행규칙	안전보건교육규정 (고용노동부고시-제2020-129호)
1	교육대상	■ 산안법 제32조제①	-	■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제①②③	■ 제14조
2	교육횟수 및 시간	■ 산안법 제32조제②	-	■ 산안법 시행규칙 [별표4]	-
3	교육방법	■ 산안법 제32조제①	-	-	-
4	교육강사	-	-	-	-
5	교육내용	-	-	■ 산안법 시행규칙 [별표5]	■ 제15조
6	교육기관	■ 산안법 제33조①	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③ ■ 산안법 시행령 [별표12]	■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~⑥	■ 제19조의2~3

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- 시행령 별표2 제 1호부터 제 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
-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
-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-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

② 안전관리자

-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
③ 보건관리자

-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(2020.9.8. 시행)

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

-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

1. 제조업 2. 임업 3.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. 환경 정화 및 복원업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, 시행령 별표2,3,5

3.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직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교육 대상		교육시간	
		신규교육	보수교육
안전보건관리책임자		6시간 이상	6시간 이상
안전·보건관리자		34시간 이상	24시간 이상
안전보건관리담당자		-	8시간 이상
재해예방 기관 종사자	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	34시간 이상	24시간이상
	석면조사기관 종사자		
	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		
	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		

다만, 직무교육을 혼합교육(인터넷+집체)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.
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, 보수교육

- 총 6시간으로 집체교육(6시간) 혹은 혼합교육(집체4시간+인터넷2시간)

② 안전(보건)관리자 신규교육

- 총 34시간으로 집체교육(34시간) 혹은 혼합교육(집체24시간+인터넷10시간)

③ 안전(보건)관리자 보수교육

- 총 24시간으로 집체교육 (24시간) 혹은 혼합교육(집체16시간+인터넷8시간)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, 고용노동부 고시(안전보건교육규정) 제17조

4. 신규/보수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(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) 이내,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·후 3개월 사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※ 예시

1) 선임일 2022.01.01. 이라면 신규교육은 2022.03.31.이내 이수

2) 신규교육 이수일자가 2022. 3. 31. 이라면

보수교육은 2024. 1. 1. ~ 2024. 6. 30. 이내 이수

2번째 보수교육은 2026. 1. 1. ~ 2026. 6. 30. 이내 이수

(* 주의 : 2번째 보수교육 일자 산정 시 1번째 보수교육 일자가 아닌 신규교육일자 기준으로 매2년 산정)

※ 관련: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](#), [시행령 별표2,3,5](#)

5. 신규교육을 혼합교육으로 이수 시 보수교육 일자 는 온라인, 집체교육 중 어떤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
-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,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수시간을 충족한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.

※ 예시

인터넷 교육(10시간) 수료 : 2월 / 집체교육(24시간) 수료 : 3월 일 경우

교육이수를 다 충족한 집체교육 수료일 3월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일자 산정

※ 관련: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9조](#)

6. 직무교육 면제조건

- 직무교육의 면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(직무교육의 면제)를 참고
- ① 법 제 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**신규교육**을 면제한다.
 -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
 - 2.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3.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, (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,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 관리자)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(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)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**보수교육**을 면제한다.
-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**보수교육**을 면제한다.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

7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/보수교육?
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, 선임 자격요건 중 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(선임되기 이전 이수)하시면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4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 2항

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2.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3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

- ▶ 총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합니다.

*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집체과정(11시간) 신청 홈페이지 : 안전보건교육 포털 (www.koshats.or.kr)

*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온라인과정(5시간) 신청 홈페이지 : 인터넷교육센터(www.safetyedu.net)
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면제대상이므로, 신규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.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(직무교육의 면제) 1항 1호

- 보수교육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 이후 매2년 전후 3개월 주기로 이수하여야합니다.

*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(8시간) 신청 홈페이지 : 직무교육센터(www.dutycenter.net)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2항, 고용노동부 고시(안전보건교육규정) 제23조의5

8. 이직 시 직무교육 신규/보수교육 선택 기준

○ 직무교육의 신규/보수교육 선택 여부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판단을 합니다. 만약 귀하께서 업무의 단절 없이 안전(보건)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, 업무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의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게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❖세부 내용

1. 업종을 변경하여 전직한 경우는 업무연속성이 없다고 판단, 신규교육 이수
ex) 건설업→제조업 등

※ 관련: [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\(2022. 5.\) 275page](#)

2. 동일 업종에서 전직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연속성이 있다고 판단, 전직하여 새로 선임된 경우라도 보수교육 진행 가능
ex) 건설업→건설업/제조업→제조업

※ 관련: [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\(2022. 5.\) 274page](#)

3. (건설업을 예로 들어) 동일 회사에 재직 중 현장만 바뀌어 선임 변경되어 관리책임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

→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선임 변경을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은 무리가 있으며 보수교육으로 진행 가능

→ 이때, 보수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서 '인사명령공문', '재직증명서' 등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음을 판단할 근거자료 제출 必

※ 관련: [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\(2022. 2.\) 112page](#)

9. 직무교육 실시가능기관 및 기관별 직무교육 일정?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
* 고용노동부 등록 직무교육기관 확인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>정보공개>사전정보공표목록>산재예방/보상>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>근로자 안전보건교육,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

현재 직무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중 22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

- [직무교육센터-직무교육센터소개-연간교육일정] 내 각 기관별 집체교육 일정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.

10. 선임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직무교육 수료해도 되나요?

- 법정 선임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근로자 정기교육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)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11.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정교육?

-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법정교육 과정은 없습니다. 다만,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에 대한 신규/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/보수교육은 총 6시간으로 집체교육(6시간) 혹은 혼합교육 (집체4시간+인터넷2시간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12. 간호사보수교육으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대체 가능한가요?

- 간호사보수교육과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별개이므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- 보건관리자 교육 34시간 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관리자의 **신규**교육을 이수 한 것입니다. 간호사 보수교육 8시간은 관련 단체 (협회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3.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“제 20조2.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”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

-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 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

※ 관련: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(2022. 2.) 111page

14. 기술사를 취득했을 경우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나요?

- 보수교육을 받아야할 기간 내에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.

※ 예시

직무교육 보수교육 기간이 ‘21.1.1. ~ 6.30.일 경우 해당 분야 기술사를 ’ 21.6.15.에 취득하면 ‘21년 보수교육 면제이나 ’ 21.7.1.에 취득할 경우 면제 대상 아님

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3항

고용노동부 고시(안전보건교육규정) 제20조 제2항 2목 참조

15.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할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

-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,
 -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※ 관련: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(2022. 5.) 275page

가. 홈페이지 안내

- (목적) 직무교육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하여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집체교육과 혼합교육(인터넷+집체)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(교육대상)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,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등
 - ※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- (교육수료 프로세스)
 - 온라인
 - 회원가입→수강신청→교육비 입금→온라인학습→평가(시험) 및 설문→수료
 - 집체
 - 회원가입→수강신청→교육비 입금→교육기관으로 방문/학습→수료
- (위탁교육기관 및 교육방법)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현재 직무교육센터는 22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상세문의사항(교육비 납부, 수료증, 계산서 등)은 홈페이지 교육기관 소개란에 있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

나. 주요 Q&A

1. 수료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?

- 수료증은 각 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추면 출력 가능합니다. 수료증 출력은 [나의강의실-나의학습활동-수강중] 메뉴로 들어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. 수료증 출력이 안 될 시 크롬에서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PC에 Adobe PDF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학습기간이 종료되면 수료메뉴[나의강의실-나의학습활동-수료]로 이관되니 참고바랍니다.
 - 처음엔 당해 연도 과정이 표출됩니다. 년도를 변경하여 검색하면 수료증 출력 가능합니다.

2. 직무교육 인터넷과정 교육비 및 환불기준

○ 교육비(산업안전보건교육원 e 과정)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과정 및 보수과정 : 15,000원
- 안전·보건관리자 신규과정 : 54,000원
- 안전·보건관리자 보수과정 : 47,000원

※ 본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교육비 환불기준(산업안전보건교육원 e 과정)

- 직무교육센터에서 개설·운영 중인 유료 온라인과정의 환불은 학습진도율 (수강시작 전, 학습진도율 1/3 지나기 전 등)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

시 기	내 용
수강시작 전	이미 낸 교육비 전액 또는 다음기수 이월
학습진도율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교육비의 2/3 해당액 또는 다음기수 이월
학습진도율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교육비의 1/2 해당액 또는 다음기수 이월
학습진도율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않음

- 단, 마지막 기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수로의 이월이 불가능합니다.
 - ▶ 학습진도율은 과정의 차수별 진도율이 아닌 과정의 전체 진도율을 의미
 - ▶ 학습진도율의 1/3이란 33%을 의미

3. 동영상 재생 오류 시 조치 방법

○ 신청한 과정의 강의실 입장 후 동영상 재생 및 진도율 반영 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시,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구글 크롬브라우저 사용: <https://www.google.com/chrome/>
 - ※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어 속도면이나 오류면에서 최적화

- ▶ 캐시 및 쿠키 삭제 후 확인
 - ※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Ctrl + Shift + Delete 키를 눌러 쿠키 및 캐시 삭제

○ 직무교육센터의 교육 수강이 크롬 브라우저 접속, 쿠키 삭제 등으로도 되지 않을 시,

- ▶ [크롬 브라우저 접속 → 설정 → "https" 검색 → 보안 → 표준 보호 모드]로 설정 및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수강 취소 방법

○ 교육과정의 취소는 [나의 강의실 → 나의 학습활동 → 수강신청/신청취소]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.

* 대기 신청 취소의 경우도 동일

5. 로그인 후 자동 로그아웃 안내

○ 해당 현상이 지속 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쿠키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구글 크롬(Chrome)일 경우

- Ctrl + Shift + Delete → 개인정보 및 보안 → 쿠키 및 기타 사이트 제거 후 재접속

2) 엣지(Edge)일 경우

- Ctrl + Shift + Delete → 쿠키 및 웹 사이트 제거 후 재접속

6. 환불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미입금상태

○ 회계부서에 이관 처리 된 상태이며 2~3일 이내 입금처리 될 예정입니다.

7. 인터넷교육(산업안전보건교육원e 과정) 계산서/전표출력 방법

○ 카드결제의 경우 전표가 발급되며, 가상계좌의 경우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. 전자계산서의 경우 교육비 입금 후 3일 이내에 발행되며, 신청 당시 기재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.

- 전자계산서 발행 시 영수계산서가 발행되며, 청구계산서는 별도요청 시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카드결제 시 [나의강의실-계산서/전표출력]으로 접속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.

8. 학습기간 종료 시, 연장 및 재이수가 가능한지?

- 학습기간이 종료된 교육과정은 복구가 불가능하여 수강기간연장 및 재이수가 불가능합니다. 학습기간이 지난 과정의 경우, 차기 기수를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유료과정의 경우 차기 기수 신청 시 재결제됨을 안내드립니다.

9. 시험 평가가 있는 교육과정의 초기화 등 재응시는 불가능한지?

- 시험 평가가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, 각 강의마다 제한된 시험 가능 횟수(3회)가 있습니다.
 - ▶ 따라서, 수강기간이 끝나지 않은 강의일지라도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재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
10. 인터넷과정(산업안전보건교육원e)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?

- 산업안전보건교육원e 교육과정 내 별도 인터넷 강의용 교재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, [부교재] 메뉴 또는 [안전보건공단 대표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→ 상단 자료마당 메뉴]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
11. 복습기간

- 복습기간은 교육 이수 후 90일까지입니다. 복습기간동안 교육을 수강하셔도 진도율에는 변동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2. 동영상을 다 봐도 이수완료가 안되는 현상

- HTML5 형식 강의 동영상의 경우,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수강했음에도 진도율 100%가 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.
 - ▶ 핵심 키워드를 모두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있는 [>] 버튼을 클릭하셔야 진도율이 100%로 반영됩니다.

13. 모바일로는 수강방법이 없나요?

- 휴대기기를 사용한 모바일 교육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
※ 관련: 고용노동부 고시(안전보건교육규정) 제2020-21호

14. 대기신청 시 결제?

- 문의하신 대기신청은 별도 결제는 필요 없습니다. 대기신청 시 신청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, 추후 대기접수를 걸어놓은 순으로 정원에 들어가신 이후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

15. 개명 등으로 실명 변경이 된 경우

- 개명 등으로 실명 변경이 된 경우, 직무교육센터 내 [개인정보 수정-개명정보 수정]에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.

16. 참석 공문

- [나의강의실-나의학습활동-수강신청]에서 해당 과정의 참석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7. 신규사업장 등록불가

- 신규개시 건설현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 된 시점에 따라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점으로 등록 후 나중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18. 수료했는데 수강중이라고 뜨는 현상

- 수료기준을 충족 후 수강중이라 표시되는 이유는 학습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학습기간 이후 자동으로 수료로 이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9. 가상계좌 입금증 출력은 어디서 가능한가요?

- 교육비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선택 시, [나의강의실-나의학습활동-수강신청-가상계좌확인] 탭에서 해당 과정의 입금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20. 크롬에서 카드결제 오류 시 조치방법은?

- 크롬을 이용하여 교육비 카드결제를 하실 때 결제 완료 후 취소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▶ 주소창에 chrome://flags 접속
 - ▶ 검색창에 samesite 검색
 - ▶ Enabled로 설정 변경
 - ※ SameSite by default cookies = Enabled
 - ※ Enable removing SameSite=None cookies = Enabled
 - ▶ 변경 후 하단의 Relaunch 버튼 클릭

21. 본인명의의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이 없을 경우 본인인증 방법

- 회원가입 시 휴대폰, 범용공동인증서, 아이핀,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 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이 없을 경우 범용공동인증서*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* 범용인증서(금융결제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) 발급한 인증서만 가능
< 사설 개인 범용 인증서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>

○ 한국전자인증(서울본사 방문 필요)

- 1) 전국의 센터를 방문해 센터에 있는 PC를 통해 신청서 작성
- 2) 서울 본사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및 대면 확인

○ 한국정보인증

- 1)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범용 인증서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(PC 활용)
- 2) 작성 시 제출 서류 방문점 설정가능(본사, 전국의 우체국 또는 기업은행)
- 3) 본사 또는 전국의 우체국 또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등록번호 발급
- 4) 발급 받은 등록번호를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입력

* 한국정보인증의 방법은 등록번호 발급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개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위 방법으로 사설 개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, 범용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

22. 소속 사업장 또는 수료증 사업장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?

- 소속 사업장 변경은 [직무교육센터 → 개인정보수정 → 기본정보수정]에서 검색하여 변경 가능합니다.

※ 사업장을 등록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내 대표자명과 다를 때

- 대표자명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시 등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 대표자명이 아시는 것과 다를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어 대표자명을 변경하시면 자동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.

- 수료증 내 사업장명은 수료 당시 사업자명으로 표시되어야 하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 [직무교육센터 → 개인정보수정 → 기본정보수정] 내 기본정보 사업장정보 수정 후 직무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
※ 단, 학습기간 내에 있는 교육과정에 한해 수강자 본인이 직접 변경 가능함